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1가단1222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유진, 김후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우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3,145,74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위 피고가,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9. 2. 1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남양주시 D 대 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현금과 대물로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 C의 남편 E은 2020. 7. 16.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 220,000,000원을 2020. 8. 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과 현물 등으로 지급받았고, 2020. 8. 3.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은 196,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19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1. 28. 남양주시 F 대지 761.7㎡(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LH공사에 명의 이전시 잔금 납입시 연체이자 및 재산세는 B 주식회사가 납입하기로 한다.

1. 연체이자(₩1,426,620,690원)

2. 재산세 (₩37,395,306원)

3. 토지대금(₩1,748,009,220원)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B(주)이 LH에 직접 납부한다. 만약에 1,124,967,216원의 차액에 대한 세금 발생시 (주)A 대표이사 G이 책임진다.

(나) 피고 회사는 위 특약사항 중 ‘1,124,967,216원의 차액에 대한 세금 발생시 이를 책임’(이하 ‘세금 부담 특약’이라 한다)지기로 하였는바, 세금 부담 특약과 관련하여 부과된 정당한 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105,915,040원이다(피고 2023. 5. 4.자 준비서면 참조).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세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를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는 별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1)가 위조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세금 부담 특약과 관련하여, 2022. 5. 31. 납기내로 하여 부과된 정당한 세액은 102,830,150원인 사실(피고 측 2023. 5. 4.자 준비서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22. 5.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당시까지의 이 사건

청구금액 합계 215,975,890원(= 원금 196,000,000원 + 사용승인일인 2020. 5. 31.부터 납기내 세액의 종기인 2022. 5. 31.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 이자 19,975,890원)에서 2022. 5. 31. 기준 납기내 세액 102,830,150원을 상계하고 나면 계산상 113,145,740원이 남게 된다.

(다) 피고 회사는 세액 상계와 관련하여, 이미 납기가 지났으므로 가산세 3%를 포함한 납기 후 세액에 의한 상계를 주장하나, 납기 도과에 따른 가산세는 세 부담자의 의무 해태에 따른 제재의 일환일 뿐 원고의 세금 부담 특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3% 가산금 등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액은 아니므로, 위 납기내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의 피고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계를 거친 후의 최종 잔금 113,145,740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 다음날인 2022. 6.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가. 피고 B이 무자력인지 여부

- (1)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0. 5. 1.경 피고 회사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본다.
- (2) 을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2020. 5. 1.경 적극재산은 2020. 3. 16. 소유권을 취득한 양주시 H 대 1,556.1㎡의 부동산(을 제3호증의 1)이 있고,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5,07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당시 소극재산(부채)은 2019. 12. 기준으로는 5,479,000,000원, 2020. 12. 기준으로는 3,86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또한 위

금융거래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지급불능에 이른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20. 5. 1.경 기준으로 무자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

별지목록

1. 1층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40.25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남양주시 대 761.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61.7분의 12.0314

- 이 상 -

